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1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7-150호, '07. 7. 2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개정이유

2008년 4월에서 5월까지 전북 김제, 익산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방역실시요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AI 의사환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초동방역 실시를 위해 시장·군수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을 규정함(별표 2).
- 나. AI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및 오염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상주시켜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규정함.
- 다. 역학조사 대상에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노 및 이를 운반한 차량을 포함하여 규정함.
- 라. 도심지에서 AI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방역실시요령을 규정함(별표 5).
- 마.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이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동물방역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팩스 02-504-0908) 또는 담당자 이메일 (yskim@mifaff.go.kr)로 제출하면 된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1. 초동방역팀 구성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도본부별로 3개팀 이상의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1.2 각 초동방역팀은 팀장, 발생지 방역요원, 해당도 방역요원 각 1명씩 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훈련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 훈련을 받는다.

2.2 개인별로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직원은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

2.3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3.1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확인한 시장·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한다.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3.3 방역본부장은 의사환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의사환축발생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4.1 초동방역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지원한다.

4.1.1 의사환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사환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1>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4.1.2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조·소독장비를 설치·운영한다.

4.1.3 의사환축 발생농장 진입로 및 축사 내·외부 바닥에 소석회(생석회)를 살포한다.

4.1.4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 정책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4.1.5 의사환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와 가족·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위생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축의 사육현황조사, 21일 이내 출입한 모든 차량(가축, 사료, 분뇨 등) 및 사람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4.1.7 양성판정시 농장내에서 사용중인 기자재는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용이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은 매물 등 폐기 처분한다.

4.1.8 살처분 완료 후 발생농장 등에 대한 필요한 세척, 소독 등을 지도한다.

4.2 초동방역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질병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 초동방역팀 철수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판정시에는 당해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1차 소독이 종료된 후 철수한다.

5.2 초동방역팀은 철수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축방역관에게 인계·인수하고 개인위생과 방역차량 등 장비소독 후 철수한다.

5.3 철수 후 바로 인근 목욕탕에서 목욕을 실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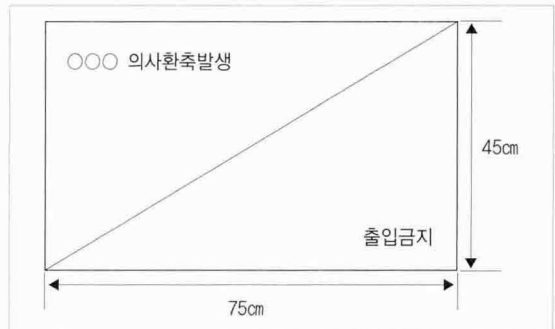
고 최소 14일간은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한다.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6.1 초동방역팀 운영을 위한 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 침구류 및 개인위생용품 : 침낭, 베개, 이불, 속옷, 양말, 세면도구, 작업복 등
- 취사용품 : 버너, 식기류, 칼, 도마, 후라이팬 등
- 초소설치용품 : 텐트, 입간판, 난로, 선풍기, 콘센트, 전선 등
- 소독 및 통제용품 : 소독장비, 소독약품, 경광등, 접근금지 띠, 안전밴드(X-밴드), 차량 유도봉 등
- 통신장비 : 휴대용컴퓨터(UMPC), 휴대폰, 충전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별표 1] 출입금지 표지판(흰색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5]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1. 공통사항

1.1 「시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 폐기

3.1 도심지의 교통·지리·유동인구·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폐기 범위 등을 설정한다.

3.2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오염지역 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3.3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희귀조류) 판매장, 대학·민간연구소, 대공원·동물원 등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3.4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매몰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일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3.5 일반 가정집, 조류자연학습장, 동물원 등 소규

모 비전문 조류 사육농장(시설)에서 시가 발생할 경우 혐오감 등 미관과 주민불편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몰지 표지판 설치여부를 정한다.

4.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조치

4.1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살처분 폐기하고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안의 분변(분변이 없는 경우 바닥의 흙 또는 사육장 우리 등 swab)에 대한 A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날로부터 한다.

4.2 방역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은 [별표 5] 입식시험요령에 따른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5. 대공원, 동물원, 조류자연학습장 등 조류사육시설 방역조치

5.1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에 따른 A 전파위험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발생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외부 개방 중단. 다만, 대공원, 동물원 등 자체적으로 방역담당 수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방 중단여부 결정
- 사육 조류에 대한 일일 A 임상검사 등 예찰 실시
-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 제한 및 출입시 소독 실시
-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육 오리류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